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8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2.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
가결)

제2차 전체회의(2026.3.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선교의원)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개정안은 연안해역의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1항 등).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객 수, 사고빈도, 위험성 평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연안해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연안 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에 낚시객 및 관광객 등의 출입이 증가하면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 발생하고 있고,

특히, '21년 7월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인천시 중구의 하나개해수욕장에서 '23년 5월부터 9월까지 갯벌 고립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연안해역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연안해역은 지리적 특성상 광범위하고 사고 발생 시 발견·구조가 어려워 다른 사고 대비 사망률이 높으므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연안해역의 출입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유사 입법례에서 연안사고 예방 및 위법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규정한 과태료 수준을 고려할 때, 「연안사고예방법」의 과태료는 낮은 편으로 유사 입법례 간 형평성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정도나 의무위반의 중대성, 유사 입법례 및 같은 법 내 다른 위반행위의 처벌 수준,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 「연안사고예방법」 및 유사한 입법례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법에서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미신고’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에 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 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 등 업계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일정 장소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의 경우, 「낙시관리 및 육성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한 낙시통제구역에서 낙시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갯벌법」은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항만법」은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로서 출입통제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상향된 과태료의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연안해역의 출입통제 위반의 경우 출입통제장소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관광객 등이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통념상 출입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과다할 경우에는 수범자의 반발로 인해 해양경찰청이 단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과태료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법무부는 「항만법」에서 동일 유형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과태료 상향이 적절한지에 대해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 법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 동법의 과태료 규정 및 유사 입법례, 과태료 집행가능성, 해양경찰청 및 법무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7. 심사결과

원안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 ----- ----- -.
<u><신 설></u>	<u>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u>
1. ~ 5. (생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u>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u>	<u><삭 제></u>
2. · 3. (생략)	1. · 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